

☐ 총회
☐ 대의원회

소집권자 지명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노동조합의 명칭								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						
소집권자	성 명		소속 기관		노동조합 직 책		생년월일 (남/여)	
	주 소					전화번호		
회의에 부칠 사항								

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호에 따라

위와 같이 []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합니다.
[] 대의원회

이
의
의

고용노동부장관(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)

직인